

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이영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466
----------	------

발의 연월일 : 2019. 9. 6.

발 의 의 원 : 이영애 의원
 김대현 의원
 김태원 의원
 김혜정 의원
 윤영애 의원
 이시복 의원
 이태손 의원
 전경원 의원

1. 제안이유

-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 등 출산·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·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(안 제9조제1항제5호)
- 나.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(안 제13조제2항)

다. 작은결혼식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5조 제1항제2호)

3. 참고사항

가. 신구조문대비표 : 붙임

나. 관계법령 : 붙임(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3조)

다. 예산조치 : 부서협의 필요함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5호를 같은 조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: 신혼부부의 주거마련을 위한 대출 및 이자 등 비용지원

제13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대구도시철도를 이용할 때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제15조 제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시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2. 작은결혼식 지원 및 문화 확산 사업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지원내용) ① 1.~4.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 <p>5. (생 략)</p> <p>제13조(아이조아카드) <u>시장은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에 아이조아카드를 발급하여 시에서 자체 모집한 참여업체를 이용할 경우 우대 및 할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15조(결혼장려 지원) <u>시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(생 략) 2. <u>작은결혼식 문화 확산 사업</u></p> <p>3. (생 략)</p>	<p>제9조(지원내용) ① 1.~4. (현행과 같음) 5.<u>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: 신혼부부의 주거마련을 위한 대출 및 이자 등 비용지원</u>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아이조아카드) ① <u>시장은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에 아이조아카드를 발급하여 시에서 자체 모집한 참여업체를 이용할 경우 우대 및 할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시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대구도시철도를 이용할 때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5조(결혼장려 지원) ① <u>시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1.(현행과 같음) 2. <u>작은결혼식 지원 및 문화 확산 사업</u></p> <p>3.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

관 계 법 령

□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한 조사·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12.>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·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□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가정의례(家庭儀禮)의 의식(儀式)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·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·조장하여 허례허식(虛禮虛飾)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전문개정 2008. 3. 28.>

제6조(보조금의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 <전문개정 2008. 3. 28.>

□ 건강가정기본법

제8조(혼인과 출산) 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·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·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9.>

제21조(가정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가족구성원의 정신적·신체적 건강지원
2.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
3. 안정된 주거생활
4. 태아검진 및 출산·양육의 지원
5. 직장과 가정의 양립
6. 음란물·유홍가·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
7.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
8.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
9.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·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·출산·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·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9.>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, 노인단독가정, 장애인가정, 미혼모가정, 공동생활가정,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10. 17.>

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□ 주거기본법

제3조(주거정책의 기본원칙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31., 2019. 4. 23.>

2.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·고령자·저소득층·신혼부부·청년층·지원대상아동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)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(이하 "주거지원필요계층"이라 한다)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